

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59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5. 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5. 1
다. 상 정 ·의 결 일 자 : 2009. 5. 13 총무위원회 상정·수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군민상의 부문별 시상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상부문별 복수추천의 경우 심의 의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군민상의 시상부문을 명확히 함(안 제3조 제1항)
-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문별 2인으로 할 수 있음(안 제3조 제2항)
-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의거 3분의 2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 득표순, 같은 득표일 때는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함.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근거
 -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,
 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
-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2009-303호(2009. 4 . 2 ~ 2009. 4 .21)
 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민상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군민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군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시상하고 있습니다.
군민상 수상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
 - 제2조에서는 시상부문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일부 시상 부문을 개정하고 또한,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부문별 2인까지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.
 - 제6조의 후보자 추천시 관내기관장에서 관계기관으로 변경하고, 제외 군민도 군민과 동일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제10조에서는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 절대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수상후보자를 결정하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

고성군의 향토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군민상의 수상후보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, 군민상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많은 군민이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.

본 조례안 제3조의 시상부문 개정은 군민상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함에 있고, 제10조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제3조에 부문별 2인으로 할 것으로 개정하는데 2인으로 하면 8명까지 수상할 수 있습니다. 남발우려가 있는데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요?
- 답 :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며, 특히 애향부문에 심사할 경우에 난관이 있어 개정코자합니다.

7. 토론요지 :

가. 어경호 위원의 수정안 제출

나. 수정안 내용

- 제3조 제2항의 “다만, 애향부문에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별 2인으로 할 수 있다”로 수정

8. 심사결과 :

- 2009. 5.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시상부문) ①군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지역사회 개발 부문</p> <p><u>2. 농수산진흥부문</u></p> <p><u>3. 문예체육부문</u></p> <p>4. 애향부문</p> <p>②군민상은 부문별로 1인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시상부문)①.....</p> <p>.....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. 농림수산진흥부문</u></p> <p><u>3. 문화체육부문</u></p> <p>4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<u>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문별 2인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시상부문)①.....</p> <p>.....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. 농림수산진흥부문</u></p> <p><u>3. 문화체육부문</u></p> <p>4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<u>다만, 애향부문에</u>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다.</p>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농수산진흥부문”을 “농림수산진흥부문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호 “문예체육부문”을 “문화체육부문”으로 하며,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애향부분에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문별 2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4조 중 “본적지”를 “등록기준지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관내기관장 · 단체장 · 읍면장이 한다”를 “관계기관장 · 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한다”로 하고, “군민”을 “군민 또는 재외군민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군 게시판”을 “군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의거 3분의2 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 득표순, 같은 득표일 때는 연장자를 우선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서무담당”을 “후생복지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